

의안번호	2221152
의 퇴 인	엄태영 의원
회 답 일	2026. 9. 29.
추 계 번호	26B4650

중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제1호의3 (정의)	국가전략종자의 개념을 신설함	의무규정 재량규정
2	제3조제2항제3 호의2 (종합계획 등)	중자산업육성 종합계획에 국가전략종자의 자금목표, 추진계획 및 확보방안을 포함	의무규정
3	안 제5조의3(국가 전략종자의 자금률 확보)	국가전략종자의 자금률 목표 설정 및 시책 마련의 근거를 규정	의무규정
4	안 제7조의2 (국가전략종자의 연구·개발 등)	공공기관, 대학, 법인 및 단체 등이 국가전략종자의 연구·개발·실증 및 육성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제1호의3(정의)	• 미대상: 개념 규정 및 기존 중자산업 육성체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·시책 관련 규정으로 재정지출 소요 발생 없음
	제3조제2항제3호의2 (종합계획 등)	
	안 제5조의3(국가전략종자의 자금률 확보)	
2	안 제7조의2 (국가전략종자의 연구·개발 등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국가전략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, 종합계획에 국가전략종자 관련사항을 추가하며, 국가전략종자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시책을 마련하고, 국가전략종자의 연구·개발·실증 및 육성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공기관, 대학, 법인 및 단체 등에 국가전략종자 관련 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국가전략종자 관련 사업은 기존 종자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고¹⁾,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미리 법안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1) 제7조(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
2.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
3.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
4.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
5.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위진수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위진수	02-6788-4650	wjinsu@nabo.go.kr